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서도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56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의의원 : 서도원 의원,

최재규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면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4조)

나. 계획 수립 등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다. 가로수 관리 사업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 및 제12조,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으면서 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이라 한다)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가로수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로수 조성·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법 제6조 및 「대

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과 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부서는 계획단계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가로수 관리 부서(이하 이 조에서 “관리 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과 관련하여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하거나 관련 계획 및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된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하거나 교통안전 시설물 및 통신·전기 시설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
4. 축제·행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로수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할 경우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식재 공간 반영 여부
2. 가로수 생육에 지장 발생 여부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적정성

가. 교통안전 시설물과 통신·전기 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

나. 교통안전 시설물의 종류·규격

다. 통신·전기 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5. 그 밖에 관계 법령, 시 조례,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 등에 따른 사항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등) ① 군수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기간, 비용 부담 등은 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등) ① 군수는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점검 시 생육 상태, 식재지 토양 상태,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枯死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시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가로수 관리 사업 등) 군수는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樹形)을 전정(剪定)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 가로수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2. 제10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를 위한 주민 참여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 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6. 가로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②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 조례를 준용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2024.12.20. 타법개정, 2025.6.21. 시행)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

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대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시·도시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024.7.23. 일부개정, 2024.7.24. 시행)

제4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조성·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7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의 대상·방법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2. 「도로법」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5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자

③ 법 제12조제5항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

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2024.7.24. 일부개정·시행)

제7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로수의 바뀌심기
2. 가로수의 메워심기

⑤ 삭제

□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조례)」
(2025.10.30. 제정·시행)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성·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도시숲등의 생태적 활력도 및 생물다양성 향상 방안
2. 도시숲등의 사회·경제적 기능 강화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조례)(2025.10.30. 일부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
2. “관리청”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구청장·군수·사업소장을 말한다.
3. “바꿔심기”란 기존 가로수와 같은 나무 또는 다른 나무로 바꾸어 심는 것을 말한다.
4. “메워심기”이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5.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에 따른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과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시장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8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9조(가로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승인) ① 관리청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관리 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가로수 관리 사업 추진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안 제5조 및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의안 주관부서인 도시공원과가 가로수를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관련한 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고 있음.

*** 가로수 관리 관련 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계	시	군
가로수 관리<보조>	147	60	87
가로수 유지관리	360	0	360
가로수 정비 및 특화거리 조성	300	0	300
가로수 조성<보조>(전환사업)	0	0	0
가창면 우록리 가로수 식재	152	0	152
긴급 가로수 안전진단 점검	43	43	0

(자료: 지방재정365, 2025.11.18.기준)

- 대구광역시 도시 전체 미관의 통일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달성군에서 별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 대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음.
- 다만, 최근 대구시 정책과 구·군의 현실적 상황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달서구·북구에서는 개별 자치구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성·관리를 제도화함.
- 달성군 또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가로수 관리 사업 추진 시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한 세부 계획이 필요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안 제5조 및 제9조)

작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서 도 원 (☎ 2291)